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3095, 3096)

2025. 09. 0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3095,3096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1)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95)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제출일자 : 2025. 08. 11.

다. 회부일자 : 2025. 08. 14.

2)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96)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제출일자 : 2025. 08. 11.

다. 회부일자 : 2025. 08. 14.

2. 제안이유

1)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의 재위탁 절차 추진

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장

애인들에게 완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위탁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의 재위탁 절차 추진
나.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에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장애인들에게 완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 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531,250천원('25년 기준)

(민간위탁금 365,25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166,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나. 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다.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23. 6.)

라. 추진 필요성

-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운영경험 필요
-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 필요

2)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 위탁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 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5년)
- 위탁유형 : 사무형 민간위탁

○ 소요예산 : 527,936천원('25년 기준)

(민간위탁금 361,936천원, 민간위탁사업비 166,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재위탁(공개모집)

나. 위탁 사무내용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다. 추진근거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서울특별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리지침」('23. 6.)

라. 추진 필요성

- 장애인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운

영경험 필요

- 보조기기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보조기기서비스 제공과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 사업수행 능력 필요

4.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동북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2) 서울특별시 서남보조기기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가. 관계법령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가운데 동북, 서남 센터가 ‘25년 12월 31일자로 위탁이 만료되면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1항¹⁾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²⁾을 추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됨.

□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운영 /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운영

○ 위탁사무

- 보조기기의 활용 및 보급과 센터 이용 등에 관한 홍보
- 이용자 상담, 평가, 사용훈련,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
- 보조기기의 보급, 대여, 전시체험장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맞춤 제작, 개조, 수리 서비스
- 보조기기 이용자 및 이용실태 관련 모니터링
- 보조기기 후원 연계를 위한 재원 확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기기 관련 사업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재위탁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수탁기관을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 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기존 수탁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을 체결)

○ 위탁범위 : 사무형

○ 위탁기간 : '26. 1. 1. ~ '30. 12. 31.

○ 운영개요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천원, '25년 기준)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6	(사)	'14.8.1~' 25.12.31. (4회)	531,250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강서구 방화대로 45길 69	한국뇌성마비복지회		527,936

2 동의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장애인 보조기기센터 운영 관련 법률근거 및 현황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르면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³⁾에서는 보조기기의 종류를 13가지로 분류하고 있고,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고시하고 있음.

3)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해, 동 법 제4조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⁵⁾에서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동 법 및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4개의 보조기기 센터를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중에 있음.

-
- 4) 「장애인보조기기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5) 「장애인보조기기법」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울시 보조기기센터현황〉

(2025.1. 기준)

센터명	위탁법인	관할 자치구	인력 (현원)	위탁기간 (사무 최초위탁일)
동 남	(재)푸르메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5명	'24.7.29~'27.7.28. ('08.11.18.)
동 북	(사)한국뇌성 마비복지회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종랑구, 성북구, 동대문구	6명	'23.1.1.~'25.12.31. ('14.8.1.)
서 남	(사)한국뇌성 마비복지회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6명	'23.1.1.~'25.12.31. ('08.11.18.)
서 북	(재)푸르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종로구, 용산구, 중구	6명	'24.7.29.~'27.7.28. ('18.5.1.)

※ 운영인원: 정원 28명 / 현원 23명(정규직 결원 및 기간제 채용예정)

- 정원: 센터별 보조공학사 등 정규직 6명, 기간제 재단사 1명

나.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북, 서남) 운영성과

- 서울시보조기기센터의 목적은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체계적인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제작, 개조, 임대, 수리 등)하여 이들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재위탁 대상인 동북·서남보조기기센터의 센터별 보조기기 보유현황 및 최근 3년간 주요실적은 아래와 같음.

〈표〉 센터별 보조기기 보유현황('25.1.)

(단위 : 대)

센터명	합계	이동	편의시설	자동차	착석자세	일상생활	IT	의사소통	직업작업학습	여가	시각	청각	기타
계	770	169	75	19	131	105	53	55	10	12	52	11	78
동북	400	99	37	8	63	63	15	25	7	6	29	2	46
서남	370	70	38	11	68	42	38	30	3	6	23	9	32

※ 정기 재물조사 및 내구연한 경과 보조기기 불용폐기 실시(연1회 이상)

<표> 서울시동북보조기기센터 주요실적 (23~24년)

(단위 : 명, %)

구 분	2024년			2023년		
	목표량 (연인원)	실 적 (연인원)	달성률 (연인원)	목표량 (연인원)	실 적 (연인원)	달성률 (연인원)
합 계	76,854	107,535	140	66,454	96,401	145
보조기기 상담 평가 사례관리 사업	2,460	5,719	233	2,292	3,296	144
보조기기 보급, 대여 사업	72,160	99,316	138	62,022	90,911	147
보조기기 맞춤제작, 개조, 수리 사업	296	286	97	184	389	211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사업	114	294	258	84	65	78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 사업	1,200	1,109	92	1,000	957	96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성 향상 사업	144	155	108	84	73	87
운영, 관리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사업	380	499	131	696	618	89
서울시 장애인 의류리폼 서비스	100	157	157	92	92	100

<표>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주요실적 (23~24년)

(단위 : 명, %)

구 분	2024년			2023년		
	목표량 (연인원)	실 적 (연인원)	달성률 (연인원)	목표량 (연인원)	실 적 (연인원)	달성률 (연인원)
합 계	57,568	70,425	122	58,828	98,836	168
보조기기 상담 평가 사례관리 사업	2,056	2,498	121	2,426	2,152	89
보조기기 보급, 대여 사업	50,436	62,168	123	50,440	87,453	173
보조기기 맞춤제작, 개조, 수리 사업	380	458	121	380	701	184
보완대체의사소통(AAC) 서비스 사업	716	263	37	520	458	88
홍보 및 전시체험장 운영 사업	3,200	3,919	122	3,200	5,115	160
지역 연계 프로그램 및 전문성 향상 사업	60	93	155	16	91	569
운영, 관리 및 보조기기 서비스 지원 사업	570	739	130	1,696	2,598	153
서울시 장애인 의류리폼 서비스	150	287	191	150	268	179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북, 서남)는 「장애인보조기기법」 제4조⁶⁾ 및 동법 제14조⁷⁾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6)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지역보조기기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⁸⁾에도 보조기기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⁹⁾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 사무는 장애인의 유형과 장애 정도에 따른 전문적인 보조공학 지식과 기술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상기와 같이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북, 서남) 운영 사무는 장애유형

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관련 상담·평가·적용·자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사례관리 사업
 2.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운영
 3. 보조기기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4. 보조기기 서비스 관련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5. 보조기기 장기 및 단기 대여, 수리, 맞춤 개조와 제작, 보완 및 재사용 사업
 6.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 교부 등에 관한 협조
 7. 중앙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협력
 8.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규모에 따라 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역센터는 제15조에 따른 보조공학사 등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지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8)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공학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객관적 경험을 보유한 법인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광역센터와 지역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9)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과 장애정도, 욕구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맞춤 제작 및 개조, 사례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25년 제3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서도 두 기관 모두 ‘적정’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5년 7월 실시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동북보조기기센터는 81.81점, 서남보조기기센터는 82.11점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남.
 - 동북보조기기센터의 경우, 협약서 제13조(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제5항에 따라 채용공고시 1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가지도록 되어 있으나, 23년도 1차 채용시 공고기간을 14일로 미준수하여 해당 사항에서 감점이 된 것으로 나타남.

라. 사회복지시설 전환에 따른 관리강화 필요

- 그동안 보조기기센터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시설(비법정시설)로 분류되어 왔으나, 202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기기센터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함.
- 이에 따라 재위탁 시 계약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에 준하는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주요 후속조치는 다음과 같음.

<표> 사회복지시설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

의무사항	내용
1.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계약 의무	○ 국가·지자체 설치 시설은 사회복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 공개모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의결 필수 - 5년 단위 위탁계약 체결, 심의를 거쳐 갱신 가능
2. 시설장, 종사자 결격사유	○ 시설장 상근의무, 결격사유 있음 ○ 종사자 결격사유 있음
3.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 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 시설장, 이용자 대표, 종사자 대표 등으로 구성
4. 행정처분 및 지자체 지도·감독	○ 시설 설치기준 미달 등 행정처분 가능 ○ 지자체장은 조직운영 전반, 회계감사 등 지도점검 가능
5. 시설 평가 의무	○ 3년마다 시설 평가받아야 함 -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또는 품질관리 실시
6. 보험가입 의무	○ 화재 등 사고 대비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의무
7. 안전점검 실시 의무	○ 시설장은 반기별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
8. 재무·회계규칙 준수 의무	○ 사회복지시설 재무, 물품관리, 후원금 관리
9. 법정시스템 사용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사용 (시설코드 부여)
10. 인건비 기준	○ 서울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적용 (매년 市 복지정책과에서 수립) -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율 + 호봉인상률

3 종합의견

- 서울시보조기기센터(동북, 서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 하는 것은, 사업의 특수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위탁 사무는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과 현장 경험이 요구됨.
- 보건복지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도 지역사회 기반으로 한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목표로, 보조기기 지

원품목 및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보조기기센터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른 보조기기센터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단, 2025년부터 지역보조기기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따른 관리·감독 기준의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6년 예산 편성 과정 등에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편성기준 등을 일괄적용할 필요가 있음.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도미화	02-2180-8147